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징계 의결을 하지 못하거나 의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의 대비 및 징계혐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관련 징계 의결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장의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53조 제1,2항 개정, 제3항 삭제)
-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출석통지를 보내고,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충분한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진술권 보장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함(안 제60조 제4항~제9항 신설)
- 성추행, 성매매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에서 누락되어 있어 '기타' 비위 구분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 비위의 유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기강 확립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1조 제1항 별표 11 개정)
- 직원이 최초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가 되어도 징계 개별기준에 규정이 불비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벌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징계 개별기준 상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징계사유 구분 및 징계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서울시 징계 개별기준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관련 징계혐의자에 대한 처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1조 제1항 별표 11의2 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 53 조 (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신설></p> <p>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④ ~ ⑦ (생략)</p>	<p>제 53 조 (소집 및 의결)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p> <p>② 인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경우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협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 의된 의견으로 본다.</p> <p>③ (삭제)</p> <p>④ ~ ⑦ (생략)</p>
<p>제 60 조 (징계협의자의 진술권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 60 조 (징계협의자의 진술권등)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협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인사위원회가 징계협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협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협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징계협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p> <p>⑤인사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협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협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p>

현 행	개정안
	<p>협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인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⑥징계협의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⑦징계협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p> <p>⑧징계협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p> <p>⑨징계협의자의 소속부서장이 제5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협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제 61 조 (징계양정기준) ① (생략)	제 61 조 (징계양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본문개정없이 별표 11호, 별표11호의2 개정
	부 칙
	<p>①(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징계양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11호 및 11호의2(제61조관련)의 개정내규는 이 내규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징계요구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 및 제60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내규에 대하여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